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1일,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호영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및 공포·불안감 유발 부호·영상 등 배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직무에 있는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나아정 전문위원)

첫째, 주호영의원안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도 연계하려는 것인바, 최근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마약류 단속·수사·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임용 제한 및 당연퇴직 사유 명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법으로 판단됨.

둘째,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음란물·불안감 유발물 배포범죄 등에 대한 임용 결격·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교육공무원법」 등에서도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일정 직급 이상 군인·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두고 있고, 최근에는 「군인사법」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자(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후 3년 경과 전)를 결격사유에 추가한 사례도 있는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두어 공무원 신분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셋째, 주호영의원안은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

연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현행 제27조 단서 구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추가하여,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시에도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는 이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에 대해 동일한 체계를 취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

넷째, 다만, 주호영의원안은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불안감 유발 정보 유통범죄를 추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이미 2025. 1. 7. 개정된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반영되어 있는바, 개정 입법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중복·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구법 관계를 정비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사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문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